

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-474호

「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」 제25조제2항에 따른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7월 9일
산업통상부장관

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개정(안) 행정예고

(부속서 12(어린이용 키보드))

1. 개정 취지

- 어린이용 키보드의 구조, 성능 보완 및 제품 표시사항 정비

2. 주요 내용

- 어린이용 키보드의 앞바퀴 직경, 조향축(핸들 기둥) 높이, 바퀴의 접착 강도 등 안전요건 보완 및 표시사항 변경

3. 개정(안) : 붙임

※ 세부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 참조

(www.motir.go.kr → 예산·법령 → 행정 예고)

4. 의견제출

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기한
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
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제출기한 : 2026년 9월 7일(월)

나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다.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(주소 및 전화번호)

라. 단체인 경우(단체명, 대표자명, 주소 및 전화번호)

마. 보내실 곳

- 주 소 :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(우 27737)

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

- 전 화 : 043-870-5455

- 이메일 : serene031@korea.kr